교사자격기준(제22조제2항관련)

자 격급 별	자 격 기 준
정교사 (1급)	1. 유치원 정교사(2급)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
	력 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
	2. 유치원 정교사(2급)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
	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
	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
정교사 (2급)	1.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
	2. 대학(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와 「평생교육
	법」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
	한다)졸업 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
	3.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
	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
	4.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
	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
준교사	1.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
н) э	

비 고

- 1. 원장·원감, 초·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장·교감, 교육장· 장학관·장학사·교육연구관·교육연구사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.
- 2. 이 표중 전문대학에는 종전의 초급대학·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 를 포함한다.